

아직도 건축사사무소 입니까?

Is there any other title than "Registered architect's office"?



최재인 | Choi, Jae-in, KIRA
(주)신화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요즘 우리 사회에는 '건축사'라는 전문용어가 없다.

모든 국민들이 우리 '건축사'가 설계하여 완성된 건축물 속에서 삶을 영위하면서도 '건축사'에 대하여 모르거나 아니면 '건축사'를 그냥 '설계사'라고 한다.

'변호사' '의사'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등 전문 직종 중 유독 '건축사'라는 직종만 잊혀진 것인가? 아니면 잊혀 질 만큼의 존재도 되지 않았던 것인가?

사회에서 '건축사'란 용어가 부재하게 된 것이 혹시 우리 건축사가 그동안 너무나 자아도취 하면서 안일하게 세상을 바라보고 살지는 않았나? 우리 건축사 모두는 크게 반성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 건축사는 변화의 흐름에 대하여 몰라도 너무 모르고, 알려고 하지도 않으며, 변화에 대처하려고 하지도 않으면서 반세기 전에 제정된 건축사법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맴돌고 있으니 말이다.

'건축사'인 우리의 고객은 재력(?)과 권력(?)이 있는 분들로 우리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닌가? '변호사'나 '의사'처럼 고객이 아쉬워서 찾아와 "잘 부탁 드린다~"는 경우와 달리 우리의 고객은 사회적인 강자로서 거드름(?)피워도 우리는 자존심 다 버리고, 설계를 하려는 마음으로 어려움을 감수하고, 고객을 상대 해야만 하는 직업이 건축사라고 본다.

감리 또한 어떠한가? 건설 전 분야에 걸쳐 신기술, 신공법, 신 자재, 실용신안, 특허 등이 새롭게 도입되고 있으며, 글로벌 시대에 맞게 V.E기법, CM 제도가 적용되어 전문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현 상황에 우리 건축사들은 과연 얼마나 자기 성찰을 하고 전문 능력을 키우고 있는지? 진지하게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된다.

건축물의 대형화, 초고층화 추세에 부응함은 물론 글로벌시대에 대처하기 위하여 전문화, 대형화된 "설계법인"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대이다.

최근 건축물은 대형화, 특수화되면서 규모와 특성 등이 세분화된 용도의 건축물로 변화 하고 있는 흐름에 우리 나 홀로 준비 안 된 건축사들은 이렇게 다변화된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 나갈 수 있는가 걱정이 앞선다.

중전에 건축사가 건축설계를 수주해서 직접 수행하던 업무는 전력법에 의한 전기설계, 소방법에 의한 소방설계, 통신법에 의한 통신설계 등 전문화, 세분화되어 건축설계에서 분리 되었고, 최근 구조분야도 전문성의 이유로 분리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 현실이다.

또한 신재생 에너지를 고려한 친환경 설계, 장애자를 고려한 B/F 설계 등의

필자는 중앙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하고, 대림산업 설계부를 거쳐 현재 신화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대표로 재직하고 있다. 대전광역시 건축위원, 도시계획위원, 디자인위원이고, 목원대학교, 우송대학교 겸임교수를 역임했으며 현재는 건축문화 신문에 건축만평을 4년째 연재하고 있다.

전문적인 분야도 외부도움을 받게 되면 결국 순수 건축설계 몫은 50%도 안 되면서 '건축사'는 설계 수주에서 설계 납품 및 공사 추진 과정 및 준공까지 모든 책임을 지고 업무를 수행 하지만, 실속은 없는 허울 좋은 '건축사'가 지금의 건축설계의 현실이라고 본다.

변호사 업계도 전문화, 대형화 되어가고 있는 추세이며, 의사도 '전문의' 제도 도입으로 전문화, 대형화하고 있지 않는가? 변호사 홀로 모든 분야의 전문 변호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최근에는 '범무법인'화하여 형사 전문변호사, 민사전문 변호사, 인권전문, 의료전문, 부동산전문 변호사들이 함께 '범무법인'이라는 '대형로펌'을 구성하고 있다. 또한 의사들도 '의료법인'화하여 각 전문분야의 전문인들로 하여금 종합, 대형화하고 있고, '회계법인' '세무법인' '노무법인' 등 역시 전문화, 대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변호사법, 의료법, 세무사법 등에는 사무소 유형을 '개인사무소'와 '특수법인'으로 구분, 설립토록 되어있다.

우리 건축사법도 시대에 맞게 개정을 하여 용도별, 분야별로 전문화, 대형화할 수 있게 하여 시대의 요구에 부합하도록 '설계법인'화를 가능하게 하여야 한다.

'건축사'도 전문 건축사를 요구하는 시대이다. 나홀로 건축사가 모든 특성화된 용도, 규모의 설계는 물론 감리를 할 수 없기에 전문분야 '건축사'집단 성격의 '설계법인'화가 될 수 있도록 건축사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변경되는 건축사법에는 '건축사사무소'와 '설계법인'으로 구분 등록토록 하고, '설계 법인'은 분야별 전문적인 경험이 있는 건축사들이 주축이 되어 대형 규모와 전문성을 갖추게 하여 글로벌 시대에 유연하게 대처 할 수 있게 한다면 건축 전문 직종으로써 건축사의 위상이 제고 될 것이며, 우리 건축사들은 국민들에게 보다 양질의 건축 서비스를 할 수 있다고 본다.

건설경기 침체로 건설시장이 붕괴 직전에 이르고, 그동안 대한민국 건설에 앞장서서 성실하고 열심히 건축 전문가로서 소임을 다 했던 우리 건축사들이 이제 더 이상 어려움을 겪어서는 안 되며, '건설사'가 '건축사'를 고용하고 있는 제도를 우리 건축사들은 바라만 보고 있어서는 절대로 안된다고 생각한다.

건축사의 고유 영역인 건축설계가 비전문가에 의해 침해 받지 않도록 하는 건축사법 개정과 건축사 영역이 보다 전문화 될 수 있게 '설계 법인화'를 가능하게 하는 건축사법 개정이 꼭 필요하다. ▣